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18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 박재호·허 영·정춘숙

조정식 · 홍성국 · 김윤덕

오영환 · 김정호 · 이용빈

김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5월 16일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군사혁명 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령(令)과 포고(布告)는 1961년 6월 6일 제정된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부칙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제5차 개정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1961년 6월 10일 제정된 「國家再建最高會議法」도 2009년 4월 1일 폐지되었음.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년 5월 16일 제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의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 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안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는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